

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·의료 R&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5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연구기관, 대학, 병원 등 인프라가 집적된 홍릉 일대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·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, 2016년 7월부터 '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·의료 R&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'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
- 나. 기존 위탁기간이 '23. 7. 24.자로 만료되고, 향후 '글로벌협력동' 운영('23년 7월)을 통한 국내 바이오·의료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 거점 마련, '홍릉 R&D 지원센터' 운영('24년 말)을 통한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공간 마련 등 사업 확대에 따라 위탁 공유재산이 추가됨에 따라, 역량있는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현 위탁시설 개요

- 위탁시설 : 서울바이오허브(3개동),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(임차),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(임차), BT-IT 융합센터
- 위치 : 동대문구 회기동, 성북구 종암동 및 하월곡동 일대
- 규모 : 연면적 18,394㎡
- 수탁기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
- 운영인력 : 센터장 포함 27명
- '22년 예산 : 7,265백만원(민간위탁금)

나. 신규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: 홍릉 바이오·의료 R&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
- 위탁기간 : '23. 7. 25. ~ '26. 7. 24. (3년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위탁시설 : 서울바이오허브(3개동),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(임차),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(임차), BT-IT 융합센터, 글로벌협력동(추가), 홍릉 R&D 지원센터(추가)

연번	시설명	위 치	규모(㎡)	개소
			입주공간(실)	
1	서울바이오허브 3개동	동대문구 회기동 109-140	건물 3개동/ 총연면적 10,058㎡ 입주공간 70실	'17. 10월
2	서울바이오산학협력센터(임차)	동대문구 회기동 1-5 일대	지상5~7(3개층) / 1,890㎡ 입주공간 17실	'20. 11월
3	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(임차)	성북구 종암동 30번지	지하2,지상6 / 3,562㎡ 입주공간 25실	'20. 11월
4	BT-IT 융합센터	성북구 하월곡동 96-113	지하1,지상5 / 2,884㎡ 입주공간 27실	'21. 9월
5	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	동대문구 회기동 109-140	지하2,지상7 / 14,711㎡ 입주공간 52실	'23. 7월 예정
6	홍릉 R&D 지원센터	동대문구 청량리동 206-54	지하2,지상3 / 2,050㎡ ※ 설계공모 준비중(부지매입 완)	'24년 예정

《 추가 위탁시설 개요 》

<글로벌협력동>

- 위 치 : 동대문구 회기로 117-3
- 규 모 : 지하 2층/지상 7층, 연면적 14,711㎡
- 주요시설 : 기업 입주공간, 공유오피스존 등
- 주요기능 : 국내 바이오·의료기업의 해외진출 및 오픈이노베이션 거점 공간

<홍릉 R&D 지원센터>

- 위 치 :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-54
- 규 모 : 지하 2층/지상 3층, 연면적 2,050㎡
- 주요시설 : 기업 입주공간,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공간 등
- 주요기능 : 바이오·의료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공간

- 소요예산(안) : 38,365백만원(3년)
 - '23년 11,146백만원, '24년 13,050백만원, '25년 14,169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시장의 책무), 제5조(전략산업의 선정), 제8조(마케팅의 지원), 제9조(기술개발의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」 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경위

- 홍릉 바이오·의료 R&D 앵커 조성·운영계획 수립 : '15. 11.
-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: '16. 3.
-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: '19. 6.
-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: '19. 11.
- 홍릉 바이오·의료 R&D 앵커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: '22. 9.
-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개최·의결 : '22.10.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는 홍릉 일대에 바이오·의료 R&D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국내 바이오·의료 기업의 성장, 교류·협력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고,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및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 중임
- 홍릉 일대를 국내·외 바이오 산업의 네트워크 구심점으로 조성하고 바이오·의료 기업의 성장, 교류·협력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·의료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,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지속성, 안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

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R&D 기술혁신 지원
 - 우수 바이오·의료 기업(중소기업, 스타트업 등) 선발 및 연구개발 공간 제공
 - 글로벌기업, 대·중견기업, 병원 및 이중산업(AI 등)과 R&D 연계 지원
 - 공용연구장비 구축 및 운영·관리, 유관기관(병원, 연구기관 등) 보유 연구장비 연계 사용 지원
- 바이오·의료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
 - 유망기술 보유기업 대상 기업 성장단계별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
 - 바이오 분야 종사자, (예비)창업자, 취업준비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
 - 경영지원(재무회계, 법률자문 등), 민·관의 자금 및 투자유치 지원
- 국내·외 바이오 산업의 네트워크 중심점으로 자생적 선순환 체계 구축
 - 글로벌기업, 대·중견기업, 국내·외 바이오 클러스터 등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
 - 국내·외 전문가 자문단 Pool 구성 및 운영
- 민간·공공 연계 바이오·의료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 - 민간 및 공공 해외거점과 연계한 바이오·의료기업 해외진출 사업 운영
 - 해외시장 진출 종합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흥릉 바이오·의료 R&D 앵커시설 관리·운영
 -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(코워킹 공간, 시민 편의 공간, 북카페 등)
 - 시설, 보안, 청소 등 흥릉 바이오·의료 R&D 앵커 시설물 관리
- 기타 위·수탁사무와 관련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협의한 사항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2.10.6. 개최) 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·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략산업의 선정) 시장은 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.

1.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예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
2.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
3. 기술·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

제8조(마케팅의 지원) 시장은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시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기술개발의 지원) 시장은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」

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내·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2.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5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바이오AI산업과 바이오정책팀 이효원 (☎2133-8734)